



의안 번호	제 7 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1. 31.(화) (제 3 회)

의
결
사
항

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
구성·운영계획(안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출자	국무총리실장 임종룡
제출 연 월 일	2012. 1. 31.(화)

1. 의결주문

- 「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최근 들어 지재권 분쟁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등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중요해짐
- 따라서 국내 지재권 소송체계를 재검토하고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(목적 및 기능)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특허소송 등 분쟁해결 제도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
- (구 성) 관계 부처(법무부, 특허청), 민간관계자(산업계, 학계, 과학기술계, 발명계, 변호사, 변리사) 등 10인 이내로 구성
- (운 영) 특별전문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부터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
4. 향후계획

-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('12.2월)
- 관련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('12.3~5월)
-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개선안 마련('12.6~9월)

※ 개선안 마련 후 필요시 공청회 개최

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(안)

2012. 1. 31.

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1. 추진배경

-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 간 지식 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법적분쟁이 급격히 확산
- 선진국들은 효율적이고 전문성 높은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 소송 등의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

· 일 본('05) : 1심 집중(동경, 오사카), 항소심 집중(지식재산고등재판소)
· 미 국('82) : 항소심을 CAFC(연방순회항소법원)으로 집중
· 프랑스('09) : 1심을 파리지법, 항소심을 파리고법으로 집중

- 우리나라에서도 ‘소송 관할 집중, 변리사 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’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, 이해관계자 간 현저한 시각차로 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

· 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위한 「법원조직법」 개정안(박병석 의원) 16대, 17대 국회 각각 발의 및 회기만료로 폐기
· 변리사의 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을 위한 「변리사법」 개정안(최철국 의원) 17대 국회 발의 및 회기만료로 폐기

- 그러나 지재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 소송 등의 선진화가 없이는 안정적 지식재산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곤란

-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재권 소송체계를 재검토 하고 소송의 전문성 ·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

2. 현황 및 문제점

□ (특허소송 관할제도) 특허관련 소송체계는 특허무효여부를 다루는 특허법원과 특허침해여부를 다루는 일반법원으로 이원화

- 이에 따라 동일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판단이 상반될 우려
- 특허무효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특허침해 여부 판단시 소송처리가 지연
※ ‘김벌리클라크(美)’ vs. ‘쌍용제지’의 특허침해소송 : 11년 8개월 소요

-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처리 건수가 적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

※ 지재권 침해소송 총 청구 건수 184건('10) 중 서울중앙지법이 153건을 처리, 기타 지방법원은 각각 1~2건에 불과하여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

□ (소송대리 전문성) 변리사는 「변리사법」 제8조*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권을 요구하나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 제87조**에 따라 대리권 불인정

* 「변리사법」 제8조(소송대리인이 될 자격) : 변리사는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.

** 「민사소송법」 제87조(소송대리인의 자격) :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.

- 특허 침해여부 판단에는 특허법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이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,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진술의 법률상 효력이 불인정

< 특허소송 현황 >



□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

- (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) 관련 당사자 모두 관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, 세부 개선안에 대한 상호간 입장 차이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

<특허 침해소송 관련 관할개선(안) 비교>

	특허청	대법원
1심	서울중앙지법·대전지법에서 통합관할	선택적 관할로 서울중앙지법 추가
2심	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	현행 유지 (1심 직근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관할)

※ 특허침해소송 2심법원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「법원조직법」 개정안 (서병수 위원) 법사위 계류 중

- (소송대리 전문성 강화) 변리사계에서는 기술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의 침해소송 (공동) 대리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,
 - 법조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판단의 대상이 기술적 문제일 뿐 본질은 법률적 판단이라는 입장이어서 합의도출이 곤란
 - ※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·변호사 공동대리 제도 도입을 위한 「변리사법」 개정안 (이종혁 의원) 법사위 계류 중
- ⇒ 따라서 관할제도, 소송대리를 포함한 분쟁해결 제도의 효율성·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(feasible) 개선방안을 연구·조사 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 필요
 - 행정부, 전문가, 산업계, 과학기술계 및 관련 업계(변호사·변리사)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심층 논의 필요

3. 목적 및 기능

- (목적) 특허소송 관할 제도 등 지재권 분쟁해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문성·효율성 높은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마련
- (기능) 특허소송 관할제도 및 변리사 공동대리 등 지재권 분쟁 해결제도의 전문성·효율성 확보 방안 논의
 - 폭 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쟁점 도출
 - 국내외 관련제도의 도입 배경,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책적 적용가능성 검토
 - 이해관계자간 협의 및 이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
 - 기 논의되어 온 사안을 포함하여 소송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다각적이고, 실현가능한 개선 대안 도출

4. 위원 구성

- (구 성) 관계 부처 및 민간 관계자로 구성(10명이내)하되,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
 - (위원장)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
 - (위원)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
 - 정부 : 법무부, 특허청, 지식재산전략기획단(간사)
 - 민간 : 산업계, 학계·전문가, 과학기술계, 발명계, 변호사, 변리사
- (임기) 특별전문위원회 존속기한까지 활동

5. 위원회 운영

- 운영 개요
 - (회의시기)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 - (존속기한) 위원 위촉 시부터 8개월('12. 2월~9월)
 - ※ 계속 운영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 연장
 - (참석범위)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외에도 상정안건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 참석
- 운영 방향
 - (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) 의견수렴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의견 수렴

- (해외사례 조사) 해외 주요국 사례에 대한 공동 조사
 - ※ 필요시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 대안 연구 및 제도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
- (개선안 마련)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, 구성원 (기관)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 도출
- (개선안 추진방안 마련) 개선안에 대한 입법절차·방법 등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및 추진(필요시 공청회 개최)

6. 향후 계획

일정	세부 내용	비고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관계 부처 및 전문가, 이해당사자 등으로 특별전문위 구성 ◦ 세부 운영방안 및 향후일정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동기간 및 횟수, 목표, 활동내역(해외사례확인, 연구용역,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) 논의 	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산업계,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도출 ◦ 해외 사례 조사(필요시 정책연구) 대상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문조사 대상·범위, 해외 사례 조사 대상·범위 논의 	필요시 연구용역 설문조사 수행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실조사,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정리 및 논의 	설문조사 결과 논의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조정안 마련 	해외 사례 조사 결과 논의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개선안 마련 도출 (해외사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) 	
7~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선안 초안 마련 	개선안 마련 후 필요시 공청회 실시